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윤준병 · 박 정
박희승 · 김종민 · 김우영
이춘석 · 민병덕 · 김한규
장철민 · 이성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」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9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6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7. 「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
자원 이용 부담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